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96
----------	------

발의연월일 : 2017. 10. 20.

발의자 : 김동철 · 서영교 · 김삼화

천정배 · 김학용 · 백승주

경대수 · 이철희 · 이종명

김병기 · 이용호 · 송기석

유성엽 · 권은희 · 장정숙

신용현 · 최경환국 · 박주선

황주홍 · 최도자 · 김종회

조배숙 · 장병완 · 김광수

이찬열 · 최명길 · 오세정

이용주 · 김종로 · 김경진

박준영 · 박선숙 · 김수민

손금주 · 김종대 의원

(35인)

제안이유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우리나라 도선사 퇴직자는 연평균 8.5명에 불과하였으나, 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로 2017년의 퇴직자는 그 두 배인 1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전체 도선사의 60%인 153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는 등 전체 도선사의 균형적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

더구나 10년 이상 도선경력을 보유한 숙련도선사의 비중도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51%이던 숙련도선사의 비중이 2020년에는 39%, 그리고 2025년에는 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한 도선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우려됨.

이에 도선사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선사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변호사, 의사 등 전문면허에 정년 제도를 두지 않고 있듯이 도선사의 경우에도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숙련도선사의 완숙된 도선 기량을 활용하면서도 안전한 도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한편 국내외 선박의 선장을 대신해 입·출항의 안전을 확보하는 도선사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영국, 독일, 싱가폴, 캐나다 등의 각 국에서는 도선사의 해양사고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민사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하고 있음.

국내의 선박소유자들은 도선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와 선박보험에 의한 손해전보를 이유로 도선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적이 없으나, 2009년 러시아 선박소유자가 처음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추후 도선사들의 보수적 운항 태도로 인한 항만운용의 비효율화가 예상되며 우수한 인적자원의 도선 업무 기피로 인한

해운업의 국가 경쟁력 하락이 우려됨. 그리고 도선사가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도선료 인상에 따른 화물운송료 인상 및 수입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도선사가 도선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해당 선박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여 도선사의 업무수행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선사 요건 중 6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 선발을 통해 도선사 고령화와 수급 차질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호).

나. 면허의 유효기간과 정년제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상 도선사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숙련도선사의 완숙된 도선 기량을 활용하면서 안전한 도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 단서, 제7조 및 제8조제2항 단서).

다.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도선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함(안 제36조의2 신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5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시험응시 접수일 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선사 연령이 68세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연도의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연도의 12월 31일을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체검사의”를 “정기 및 정밀 신체검사의”로 한다.

다만,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도선사의 책임제한)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도선사의 민사책임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손해가 도선사의 고의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i)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은 날을 말하고,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도선사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	<삭 제>
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제8조(신체검사) ① (생 략)	제8조(신체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	

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난 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합격기준과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 다만,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정기 및 정밀 신체검사의-----

-----.

제36조의2(도선사의 책임제한) 도선사가 도선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도선사의 민사책임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도선 중이었던 선박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3배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손해가 도선사의 고의 또는 손해

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
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